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
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중 총계 “128”을 “1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27”을 “128”로 하며,
3급 또는 4급 이하 “121”을 “12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28</u>	<u>129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27</u>	<u>128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21</u>	<u>122</u>	+1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9